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1. 관련

- 가.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에 따른 협조 요청(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호, 2020.2.23.)
- 나.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 요청(보건의료정책과-1470호, 2020.3.2.)
- 다.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보험급여과-1655호, 2020.4.14.)
- 라.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992호, 2020.5.8.)
- 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 바.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보험급여과-137호, 2020.1.8.)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불임과 같이 추가하오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21.3.30.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추가 질의·답변 1부, 끝.

보건복지부



수신자 17개 시·도,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협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송서현 행정사무관 장태영 보험급여과장 이종규 전결 2021.3.30.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1768 (2021. 3. 3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4(여진동)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044-202-2743 팩스번호 044-202-2734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추가 질의·답변

○ 질의·답변

※ 아래 질의·답변은 2021.3.30. 진료분부터 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경우 산정 할 수 있는 수가는?	○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경우에 아래의 수가만 산정 가능함 - 아 래 -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진찰료 관련 가산 (야간, 공휴, 소아 등)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 전화상담관리료 ※ 해당 수가의 적용일자 등 관련 세부내용은 기 안내에 따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함
2	전화상담·처방 시 만성질환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여부	○ 가-14 만성질환관리료는 별도 산정 불가
3	전화상담·처방 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시행하는 정신요법료 별도 산정 가능 여부	○ 정신요법료 별도 산정 불가